

2024년도 제1차 한국형 ARPA-H 프로젝트 통합공고

2024년도 제1차 한국형 ARPA-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26일

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

< 한국형 ARPA-H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방향 >

전략목표	고비용·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&D 추진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
성과목표	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 기술 확보 및 보건의료 현장 적용

임무분야별 미션

임무1 보건안보	백신·치료제 주권 확보로 보건안보 확립
임무2 미정복질환	암·희귀·난치질환 등 미정복 질환 극복
임무3 바이오헬스	바이오헬스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초격차 기술 확보
임무4 복지·돌봄	초고령사회 대응 지속가능한 복지·돌봄 서비스 개선
임무5 필수의료	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기술 확보

※ 이번 공고는 임무1과 임무4 분야에 해당하는 신규 과제 공고임

I.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

※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 있으며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,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.

RFP 번호	임무	RFP명	지원규모	지원기간	과제구성 요건 (※ 참고)	선정예정 과제수*
1-1	① 보건안보	초장기 비축이 가능한 백신기술개발 (백신 초장기 비축기술 개발) (STOREx : Stockpile Technology to Omit Repeated Entity for Vx)	<1단계> 1,0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500백만원) <2단계> 2,500백만원 이내/년 <3단계> 2,000백만원 이내/년	5년(2+2+1) 이내 * 1차년도 6개월이내	①, ②	1단계: 4개 이내
1-2		팬데믹 대응 백신 초신속생산이 가능한 모듈형 생산시스템 개발 (백신 탈집증화 생산시스템 개발) (DeCAFx : Decentralizing & Accelerating Facility for Vx)	<1단계> 2,0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,000백만원) <2단계> 4,000백만원 ~ 8,000백만원 이내/년 <3단계> 1,000백만원 이내/년	5년(2+2+1) 이내 * 1차년도 6개월이내	②, ③	1단계: 2개 이내
2-1	④ 복지·돌봄	(근육량·근력·근기능 복합적 향상을 위한) 멀티모달(Multi-Modal) 근감소증 치료기술 개발 (HAPPY : Holistic Approach for Promoting Physical Youthfulness)	<1단계> 2,0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,000백만원) <2단계> 4,000백만원 이내/년	5년(2+3) 이내 * 1차년도 6개월이내	②, ③	1단계: 2개 이내

* RFP별 상세 지원규모는 반드시 신청 과제의 RFP 참조

** 경쟁형 R&D로서 단계평가를 통해 중간탈락 과제 발생

(단계평가, 특별평가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·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 감액·증액 등 가능)

※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

- ① (주관)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
- ② (주관+공동)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
- ③ (주관+공동, 주관+공동)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

	① 주관	② 주관+공동	③ 주관+공동, 주관+공동
과제 구성 요건 (예시)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주관 OO대 / A교수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주관 OO대 / A교수 공동 △△대 / B교수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주관 OO대 / A교수 공동 △△대 / B교수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주관 OO대 / C교수 공동 △△대 / D교수 </div>

- ※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·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(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(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))
- ※ 지원분야·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, 접수 경쟁률,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

II. 신청요건

□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※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(RFP)별로 확인 필요

※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

※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(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)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(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)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□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

※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/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약속서를 제출해야 함

·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
□ 신청 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

<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(3책5공)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>

구분	연구책임자	책임자 외 연구자
주관연구개발과제(기관)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자
공동연구개발과제(기관)	참여연구자	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제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

·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

Ⅲ. 신청 방법

□ 공고 및 접수처

※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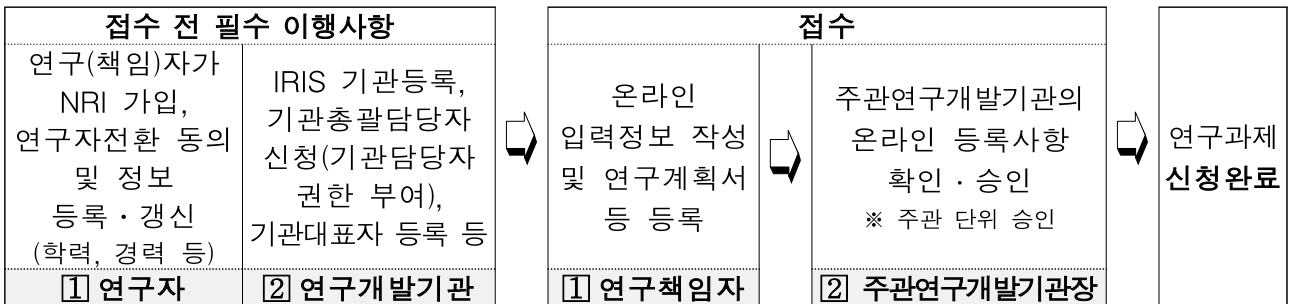
▶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*(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.

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- (공고)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사업공고
- ②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 사업공고
- (접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
□ 신청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 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 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- 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-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□ 공고 및 접수기한

- 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,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

공고대상	연구책임자 과제신청기간(전산입력)*	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 기간**
2024년도 제1차 한국형 ARPA-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	2024. 8. 12.(월) 14:00 ~ 8. 26.(월) 12:00	2024. 8. 12.(월) 14:00 ~ 8. 26.(월) 18:00

* 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를 원칙으로 함

**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을 완료해야 함(단,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)

※ 전산입력(접수)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

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에 접수대상에서 제외됨

※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(마감 2일전부터)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□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 함

※ 상세내용은 www.htdream.kr → 자료실 → 법규/서식에서 확인 가능

※ 향후 신설예정인 ARPA-H 사업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.

V. 기 타

□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○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-10호, 2024.2.29. 개정)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
○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연구개발기관 유형	연구개발비 비율	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
	정부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
비영리기관	100% 이하	-	-
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
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
공기업·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(비영리·영리기관 공통 적용)	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. 연구시설·장비비 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		
$\text{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} = \frac{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{(\text{해당 연구개발기관})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 \times 100$			

※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
□ 연구과제 선정 후 관련사항

- 연구과제 보고 및 평가 시 주요사항
 -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시점 또는 미션PM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적보고 의무 준수(진도점검 등)
 - 과제 선정 후,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, 실패 사례 극복 공유,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단 성과 교류회와 미션PM센터 아카데미에 적극 참여해야 함
 -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 목표 및 범위, 계획 등을 미션PM이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,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기관은 그 요청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

□ 연구성과 관련 안내사항

- 본 과제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해 대외 발표(논문, 특허, 언론홍보 등)를 추진하는 경우 미션PM과 사전 합의 필요 함
- 성과관리 기간인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 뿐 아니라 이를 경과한 이후라도 과제로부터 발생한 모든 성과(논문, 특허, 기술이전 등)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

□ (해당 시) 연구데이터 관리

- 과제 선정 시, 「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‘데이터 관리계획’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임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’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함
 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·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

과제평가단에서 심의,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

□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 - 각 소속기관(대학 등)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해야 함
 - IRB 심의결과 제출&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(IRB 포함)에서 담당
 - 소속기관 IRB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
 - (해당시) 인체유래물 이용 시,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
 -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*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(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)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
- * 인체유래물: 혈청, 혈장, 소변, 혈액유래 DNA, LCL, LCL유래 DNA 등

□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

-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‘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’의 담당 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·기탁하여야 함

□ (해당 시)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

-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
- * 시험&연구용 LMO 정보시스템(<https://www.lmosafety.or.kr/mps>) 확인

□ (해당 시) 젠더혁신 관점 연구

-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/젠더(성과 젠더, 성 또는 젠더)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작성 필요함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보고사항
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□ (해당 시) 기업 수행 과제시 청년고용 친화형 R&D 3종 패키지 세부지침(안)에 의거하여 채용이 필요함

* 청년고용 친화형 R&D 3종 패키지 세부지침(안) 확인

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수정된 공고내용은 개별 안내하지 않으므로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임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

□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-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 접속
- 법, 규정, 규칙: 「자료실」 → 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 → ‘공통 법·규정’ → ‘국가연구개발혁신법’ 관련 확인

※ 자세한 내용은 '공고 안내서' 참조

□ 향후 일정

일 정	내 용
2024. 9월 초	선정평가 실시
2024. 9월 중	선정결과 공고
2024. 9월 말	협약 및 연구개시

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

VI. 문의처

□ 사업공고 열람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

□ 담당자 안내

- 과제 접수(시스템 입력) 관련
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1877-2041
 - ※ IRIS 콜센터 운영시간 : 09:00 ~ 18:00
- 공고단위(RFP)별 담당자 안내

RFP 번호	임무	RFP명	분야	담당자	연락처
1-1	① 보건안보	초장기 비축이 가능한 백신기술개발 (백신 초장기 비축기술 개발) (STOREx : Stockpile Technology to Omit Repeated Entity for Vx)	연구내용	홍기종 미션PM	02-2288-6140 calcium2@khidi.or.kr
1-2		펜데믹 대응 백신 초신속생산이 가능한 모듈형 생산시스템 개발 (백신 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개발) (DeCAFx : Decentralizing & Accelerating Facility for Vx)	연구내용 외	최미연 책임연구 원	02-2288-6112 mychoi1@khidi.or.kr
2-1	④ 복지·돌봄	(근육량·근력·근기능 복합적 향상을 위한) 멀티모달(Multi-Modal) 근감소증 치료기술 개발 (HAPPY : Holistic Approach for Promoting Physical Youthfulness)	연구내용	이인규 미션PM	02-2288-6139 leei24@khidi.or.kr
			연구내용 외	정민섭 연구원	02-2288-6129 jms9065@khidi.or.kr

[붙임] 공고문 참고자료 (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요망)

1. 프로젝트 설명서
2.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 양식 등